

 신안산대학교	학생 준칙	규정 번호 2-5-8 제정 일자 1995. 3. 14. 개정 일자 2024.3.20. 책임부서/팀·계 입학학생처
---	--------------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학생준칙은 학생이 본 대학의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진리, 박애, 성실의 자세로 학교의 생활에 임하여 건전한 학풍과 최상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차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한 소양을 갖추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근거)** 본 학생준칙은 학칙을 비롯한 학교의 제반 규칙에 근거하여 학생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학생증

- 제3조(학생증 교부)** 본 대학에 입학수속을 완료한 학생은 즉시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제4조(학생증 휴대)** ①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학생증을 휴대하고 본 대학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자는 수강, 수험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
- 제5조(학생증 대여)**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 제6조(학생증 분실)**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교내 기업은행에 신청하고 재발급 받는다. <2009.7.6 개정>
- 제7조(학생증 반납)** 졸업, 휴학, 퇴학, 제적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생증을 본인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 3 장 집회·게시·인쇄물

- 제8조(집회결사의 신고)** 본 대학 학생의 모든 집회 및 결사는 교내·외를 막론하고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도교수를 거쳐 사전에 입학학생처에 신고한다. <개정 2023.3.30., 2024.3.20.>
- 제9조(결과보고)** 집회결과 보고를 학생처 소정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학학생처장을 경유,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2024.3.20.>
- 제10조(지도교수 지도)** 모든 집회에 참석한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 (인쇄 및 광고물의 신고)** 교내·외에 학생이 인쇄물의 제작 및 배포 발송 또는 광고를 할 때에는 사전에 입학학생처에 통보한다. <개정 2023.3.30., 2024.3.20.>
- 제12조 (학생활동의 금지)** 학생활동의 행위가 본 대학의 기능을 해하고 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제 4장 각종 행사 참가

제13조 (행사참가) 학생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14조 (각종행사의 참가허가) 학생으로서 교내의 각종 행상에 참가코져 할 때에는 사전에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생처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5조 (행사참가 제한) 시험기간 중에는 대내·외 행사에 참가할 수 없다. 단,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행사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연합행사 제한) 학생은 총장이 인정하는 연합행사 외에 외부단체와의 행사는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한다.

제17조 (휴일의 행사 및 단체활동) 휴일에 학교에서 행사나 학생의 단체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과장(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5일전에 입학학생처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행사시 일직 담당교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2024.3.20.>

제18조 (응원의 제한)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외행사에 단체로 응원할 수 있다.

제 5 장 예 의

제19조 학생은 교내·외 생활에 있어서 본 대학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지니고, 학생 상호간은 물론 교직원에 대하여 예의를 지키고 품위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일상생활을 통하여 봉사정신 및 준법정신을 발휘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 6 장 교내생활

제21조 교내에서는 항상 정숙, 청결하여야 하며 학업에 성실하여야 한다.

제22조 교구는 소중히 다루고 항상 정리정돈에 힘써야 한다.

제23조 운동장은 체육의 도장이므로 항상 깨끗이 하고 운동기구는 강의실이나 복도에서 사용을 금한다.

제24조 대학내에서의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제 7 장 상 벌

제25조 학생은 학칙에 의거 상벌을 받을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26조 학생준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생준칙은 199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생준칙은 199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생준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생준칙은 2003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생준칙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생준칙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